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1. 입찰 유무효의 범위

〈질 의〉

- 적격심사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만 무효인지, 전체 입찰이 무효인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무효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만 무효로 한다는 의미임



2. 수의계약시 지점과 계약체결 가능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IV-1-(2)-② ‘법인의 경우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지점이 소액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1-(2)-②항의 계약담당자가 관할 시·도 지역내에 소재한 사업자(법인의 경우 지점을 포함한다)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지점이 소액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점은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 계약은 본점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3. 종전 법인명의 입찰시 입찰유·무효 여부

〈질 의〉

- 2006. 3. 27자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의 명칭이 변경완료된 업체가 법인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2006. 3. 31 종전 법인 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효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및 제15조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됨

4. 동일종류의 실적인정 가능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적용 여부

〈질 의〉

-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시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공사의 명칭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내용은 동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가능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별지1> I-1 주1)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규모 또는 양)”을 의미하는 바,
- 실적인정에 있어 명칭 등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인 경우라면 동일실적으로 인정가능 할 것이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에도 행정자치부 예규 제188호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5. 민간위탁계약 적용법령 및 계약금액조정

〈질 의〉

-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에 있어
 - ①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이 舊 지방재정법상 적법한 계약인지 여부
 - ② 계약기간중 비용의 상승, 물가의 상승, 기초용역 산정의 착오, 부대비용(유류대, 차량 수리비용등의 인상등) 추가 지출 등으로 인한 해당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의 ①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국가계약법 적용시점 : '06년 이전)에 있어 舊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바,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도 가능할 것임

○ 질의 ②에 대하여는

- 귀사가 체결한 계약이 舊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이라면, 舊 지방재정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7)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질의사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약이므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와 귀사가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6. 설계변경단가 적용방법

〈질의〉

- 하천수해복구공사 계약시 물량단가는 설계단가에 100%를 적용하고 제경비(간

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단가는 낙찰율보다 하향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신규비목의 1차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물량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설계변경 계약하였으며, 설계변경 후 1차 설계변경한 신규비목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2차 설계변경하는 경우에 설계변경단가 적용 방법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할 경우 단가적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계약을 한 후 동 비목 등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물품구매입찰시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일

〈질의〉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의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평가받는 기준일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5호)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중 입찰



에 참가하는 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8. 혼잡 등 수의계약시 공공기관이외와도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수의계약을 체결시 발주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민간)에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나목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IV-3-② 규정에 의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고,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바, 이 경우 발주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가능할 것임

9. 시설공사적격심사 서류 징구 및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질 의〉

- ① 행정자치부 예규 제136호(2004. 2. 6)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부칙 제4항 ‘<별표 4>의 심사항목 중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평가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의한 것만 적용한다'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예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② 위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로 <별표 4-1> 각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질의 ①에 대하여는

- 행정자치부 예규 제136호(2004. 2. 6)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4항에 의거 <별표 4>의 심사항목 중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평가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의한 것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 경우의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예규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될 것임

○ 질의 ②에 대하여는

- 행정자치부 예규 제136호(2004. 2. 6)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1> 각서 규정에 의하면 <별표 4>에 관련된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있어 부정한 방법, 허위로 제출한 사실 등이 발견된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감점평가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36호 시행일(2004. 2. 11)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예규시행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을 각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10. 특정 신기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맨홀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동일한 분야의 신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그 중 특정 신기술의 보유여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188호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Ⅲ-2-다'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 질의하신 맨홀공사가 위 예규 <별표 1> 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기술의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분야의 신기술이 여러 가지일 때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특성,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임

11. 하자불분명 등 수의계약 평가기준

〈질 의〉

- 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3 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특허공법 등 공사에 있어 IV-3-다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②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3-다의 평가기준에서의 금차예정금액의 의미가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지 여부
- ③ 전문공사가 소액수의계약 대상(7천만원 이하)일 경우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의 ①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3 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특허공법 등 공사에 있어 IV-3-라 규정에 의거 IV-3-다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95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90점 이상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 질의 ②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3-다의 평가기준에서의 금차예정금액의 의미는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 질의 ③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7천 만원 이하인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의한 수의계약 및 추정가격 5백 만원 이하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함

12.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 의〉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사업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설계변경 사유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국가계약법 적용시점 : '06년 이전)에 있어 舊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9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바,
- 사업물량이 당초 설계서보다 감소되었다면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됨

13. 기술용역 국제입찰 해당여부

〈질 의〉

- 서울특별시와 베트남 하노이시와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용역 입찰에 있어 사업비가 국제입찰 대상일 경우 양해각서 내용(우리나라 기업 참여)을 근거로 국제입찰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국제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3억원 이상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울산광역시 제외)에서 발주하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용역의 경우는 국제입찰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지방계약법 제5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

과 건강 및 지식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양해각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구체적인 양해각서의 내용, 작성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14. 허위서류 제출자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질 의〉

-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한 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입찰자가 실적증명서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가능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등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함

15. 공사정지기간중 선금지급 가능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체결 및 착공을 하고 선금 신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민원발생)에 의거 공사 일시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선금 지급 가능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선금급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92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금액 규모별 일정율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일반적으로 선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시기적으로 미리 노임을 지급할 필요가 있거나 앞당겨 자재구입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가 일시중지 되었다 하더라도 선금지급이 가능하므로 계약담당자가 선금지급여부를 최종 판단할 사항임

16. 기술용역의 지역의무공동도급 가능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공동도급 입찰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 시 관련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면허 등 자격요건의 충족범위 및 자격요건을 대기업간 제한 또는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도록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

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공사) 건설공사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1인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용역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17.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충족범위

〈질 의〉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중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서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 이상”갓춘 자로 규정한 사항에 있어 해당 자격요건의 충족 범위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 예규 제182호) 제6장제1절제3호,(2),(나)에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서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 이상”의 구성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기준은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를 구성인력으로 갖춘 자도 가능하고 이공계로서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 이상의 구성인력을 갖춘 자도 가능하다는 의미임



18.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지점의 의미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의 지점의 범위가 상법상 등기된 지점인지 이름 등만 지점으로 붙이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 IV-1-(2)-② 소액 수의계약 요령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할 경우 ‘법인의 경우 지점을 포함한다’ 규정에서의 지점의 범위는 상법상 등기된 지점을 의미함

19. 공사시방서에 사급자재의 특정제품 명기 발주 가능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공사시방서상 사급자재를 특정제품으로 명기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공사시방서상 사급자재를 특정제품으로 명기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8호) IV-⑦ 규정에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당해공사 집행에 있어 특정제품의 불가피한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

여야 할 사항임

20. 입찰공고 오류 적용시 낙찰자 결정방법

〈질 의〉

-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평가기준을 <별지9>로 적용토록 입찰공고하여야 하나 <별지7>로 잘못 공고하여 적용·개찰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각각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 질의사항과 같이 낙찰자 결정 이전에 평가기준 전체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평가기준을 다시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1. 입찰공고 오류 적용시 낙찰자 결정방법

〈질 의〉

- ①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화장로 제작·설치·납품 입찰에 있어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의 「공급협약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경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 여부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규정으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 ③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협상순위를 반드시 발표하여야 하는지 여부
- ④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에서 심사결과에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의 ①에 대하여는

- 질의하신 사항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여부와는 무관하며 다만, 국내업체에도 동등물품의 납품능력이 있으나 「공급협약 약정」을 통한 외국업체만 참여토록 하였다면 제한경쟁 계약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8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제한이 될 것임

○ 질의 ②에 대하여는

-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함

○ 질의 ③ ④에 대하여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 사업 등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6호)에 의하여야 하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22. 수의계약운영요령의 불가피한 사유의 의미

〈질 의〉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사유인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란 무엇인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의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규정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을 의미함

23. 나라장터에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입찰 유무효여부

〈질 의〉

-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에 있어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는 변경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처리기한 관계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전 대표자 명의로 투찰한 경우 당해 입찰의 유·무효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전자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4. 민간위탁사업 계약시 지방계약법령 적용여부

〈질 의〉

- 민간위탁사업의 시행에 있어 계약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에 있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집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 질의하신 민간위탁사업이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사업이라면, 당해 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